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가을호 | 2014년 11월 14일

발행인 유병우
 편집인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번지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김성태 · 이노근 · 한정애 의원

“우버”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여객법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버(Uber)”가 택시업계의 경영실적악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우버”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여객법)을 잇따라 발의해 택시업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서울강서을)은 불법 “우버”가 택시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여객운수업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 임차인이나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이외에도 사업용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운수업 시장의 질서를 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성태의원 등 11인이 여객법을 발의하였다.

같은당 이노근의원(국토교통위원, 서울노원구 갑)도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버앱을 통한 알선이나 조장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여객법을 발의하였다.

새정치 민주연합 한정애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그에 맞추어 자가용 또는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파견하여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방식



▲ 김성태 의원.



▲ 이노근 의원.



▲ 한정애 의원.

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안으로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운송행

위를 알선하는 자도 기존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여객법을 발의 하였다.

정성호·이노근 의원 교통현안 문제 국감에서 서면 질의



▲ 정성호 의원.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의원(국토교통위 야당 간사,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경기 동두천 양주)

은 ‘14년 10월27일 ’14년도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택시를 비롯한 교통단체의 현안 문제를 서면 질의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사택시영업행위로 인하여 택시산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 우버택시, 렌터카운전자 알선 등 유사택시영업행위 근절방안 및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최고한도 4,000만원 + 연 5.9% + 수수료 0원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소 300만원 ~ 최고 4,000만원
- 금리 : 최저 연 5.9% ~ 최고 19.9%(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개월 중 선택 가능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연체 이자율 : 17.9 ~ 29%(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한시적 적용으로 금리 변경 가능)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심사기준 완화)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7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가능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고객센터 1588-5330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요망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40702-165545호(2014.07.03)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최현태 이사장... 5선에 성공 총량제 따른 감차보상 적극추진 할 터



▲ 최현태 이사장

지난 10월 29일 2과전으로 치뤄진 충북도 조합 제11대 이사장 선거에서 최현태 현 이사장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선의 영예를 따냈다.

2002년 제 7대 이사장에 당선되어 취임한 최 이사장은 8, 9, 10대에 이어 11대 이사장까지 연거푸 당선돼 5선의 영광스런 기록을 세웠다.

이사장 선거때마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번번히 얻어 5선의 기록을 세우고 통련할 수 있었던 비결은 현재 현대식 조합 사옥을 건설, 조합원들의 긍지를 높여주고 조합원들의 업권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한 업적이었다.

2002년 제 7대 이사장에 취임한 최 이사장은 전국 16대 시·도 조합

중 유일하게 장마철이면 비가 새어 스며드는 낡은 구사옥에서 신세를 면해야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신사옥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내는 쉽지 않았다. 반대하는 조합원에게 다가가 신사옥의 필요성을 마라톤 설득을 벌여 2004년 총회에서 신사옥 건축 동의를 얻어냈다.

그런데도 소수조합원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4년동안 허송세월을 했다.

하지만 충북도 조합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최 이사장의 집념은 8대 이사장에 재선되면서 탄력을 받아 2008년 8월 14일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에 1200평의 대지에 착공 2010년 4월 30일 이전했다.

최 이사장은 전국 16개 시·도조합 중 가장 운송여건이 열악한 충북도 조합 발전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브랜드 택시 추진 등을 해냈다.

최 이사장은 11대 이사장으로 당선 후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 적극 추진' '제도 및 세계개선에 총력 경주' '조합 경영 수지 개선 및 복지사업 확대' '공제 지부 내실있는 경영' 등 4개항의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전조합 김성우 이사장 3선 성공 11월 3일 실시한 9대 대전 조합



▲ 김성우 이사장

7대, 8대 이사장을 연임하면서 이사장으로서 경륜을 높이 쌓아온 김성우 이사장은 제9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 들의 여망을 담은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LPG 부가세를 감면하여 감차 예산을 만드는 법안이 꼭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겠다" "감차 비용에 대하여 정부와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 불법 유사콜택시 우버는 대전에 한 발짝도 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힘 있는 공약에서부터 "양반콜 콜지원금 3백원을 5백원으로 높이겠다" "타이어 배터리, 에어컨가스 등 특별 할인가간을 늘리겠다" "4층 전무실에 교통불만민원, 생활 법률 상담, 세무상담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알려주는 '조합원 애로사항 해결센터'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등 섬세한 부분까지 공약으로 제시 조합원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김이사장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아 친화력이 떨어질 것 같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업적으로 돌파했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 충전소를 운영하면서도 철저하게 조합원 위주로 생각하고 실천했다.

조합원에게는 대전 시내에 제일 싼 값으로 LPG를 판매하면서 충전량과 상관없이 단 10만 넣어도 70원 할인금을 지급하고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돌려줬다. 또한 양반콜 회비를 전국에서 가장 적게하고 승차요금의 상한액없이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 받는 등 대전시청을 움직이는 방법도 탁월했다.

김이사장은 ▲감차정책 성공으로 소득향상 및 재산권 확대 ▲제도적으로 안정된 개인택시 영업환경조성 ▲중단 없는 혁신 경영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김성우의 3대 목표로 내세우고 직원제 표발 같이 했다. 김 이사장은 "믿고 9대 이사장으로 뽑아준 조합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1면 '정성호·이노근 의원 교통현안 문제' 기사에 이어...

2. 운전적성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택시에 대한 에어백 의무화 장착 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4. 자동차손해배상 평가원 설립과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5. 사업용 대형자동차(화물,특수)자동차 검사제도의 교통안전공단 일원화에 대한 반대이견이 높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 택시를 비롯한 교통관련단체 현안문제를 집중 질의하였다.

또한 이노근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14년 10월 13일(월) 제329회 정기회) 질의에서

○ 우버택시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택시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됨. 우버측은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만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 이에 관련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 대책은?

○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통신수단 등을 통해 위법의 행위를 매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봄. 견해는?

○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고, 성 범죄자와 같은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 가능성 문제가 큼. 견해는?

등을 질의 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면 답변으로

○ 우버택시 문제점(서울시 서면답변)

1. 적은 보험료 등 유지 관리비로 법이 금지하는 자가용유상운송 영업을 통해 수입금을 가져가므로 적법한 영업행위자와 대비 불공평 초래

2.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앱에 미리 등록해 놓고 탑승 후 간편하게 자동 결제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3.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 방지책 없음

4. 불법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 우버택시 불법성(서울시 서면

답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1항 위반 : 렌터카 회사로부터 리무진 등의 차량을 대여하여 택시영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3항 위반 : 제휴를 맺은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카를 고용한 기사와 함께 제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2항 위반 : 제휴를 맺은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카를 제공하고(운전자 알선이 불가능한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 등 서울시 서면답변을 받아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박상익 이사장 재선 성공 통학택시·복지추진에 역량 집중할 터



▲ 박상익 이사장

지난 11월 6일에 치러진 전북개인택시조합 제11대 이사장 선거에서 현 박상익(58·이사장)이 2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 연임된 박상익 이사장은 제10대 이사장에 이어 2연임으로 2018년까지 전북개인택시조합을 이끌게 되었다. 2연임에 성공한 박상익 이사장은 “선거기간동안 조합발전을 위해 조합원들의 크고 작은 제안과 건의를 귀담아 전북개인택시발전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상익 이사장은 선거기간동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영세성을 면치 못한 우리업계를 일으켜보려는 일념으로 4년동안 동분서주하게 움

직였다”며 오지 및 벽지마을에서 영업하는 조합원까지 만나 한표를 호소했다.

박상익 이사장은 지난 4년 재임기간동안 택시업계의 숙원인 대중교통법 추진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중교통법의 대체법안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정년제 시행 ▲70세 도달 시 정밀검사 의무화 ▲승차거부 3회시 사업면허취소라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입법예고했으나 연합회 및 전국 이사장과 힘을 합쳐 저지하기도 했다.

제11대 이사장 선거에서 박상익 이사장은 공약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보조금 지원 ▲공제서비스 개선 ▲택시요금 2년마다 조정 개선 ▲택시감차 대수 조기 추진 ▲LPG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신규등록차량 부가세 계속 면제 ▲통학택시 및 복지택시 추진 ▲택시승강장 설치 확대 ▲택시 외부광고(LED) 추진 ▲이사장 2연임 약속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2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 없어야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조합원 여러분!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개인택시 30년사에 한번도 없었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합회장 선거를 둘러싼 청탁, 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돼 연합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이사장 4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6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크나큰 오명을 남겼습니다.

어느때 보다도 개인택시업권 보호를 위해 연합회장을 비롯한 시·도조합이사장이 고군분투 하였고 성과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장 취임이래 숙원사업이었던 개인택시 차고지폐지 문제를 해결하였고 특소세 감면과, 비록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 되었지만 ‘대중교통육성법’을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잉공급된 택시를 감차하는 근거를 마련한 ‘택시발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교통단체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자부심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한낱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6만4천 조합원 여러분의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연합회 임·직원 일동은 어떠한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받고 반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현실앞에서도 연합회는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국철희 서울조합 이사장을 연합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여 대정부 대국회활동 등 연합회 업무에 한치의 착오없이 대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합회 임·직원은 동요하지 않고 일치단결하여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이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도 투명하게 정비 하는 등 연합회 차원의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16만 4천 조합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또한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연합회 임직원 일동 -

택시 기사도 혜택 받자!

단거리 뛰어도 포인트 적립되는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리모 출시!



리모가 기사님께 드리는 혜택 세 가지!

1 암체 승객은 그만!

제시간에 안 왔다고 다른 차 탑승하는 ‘암체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리모는 꼭 탑승할 고객만 예약하니까요.



2 승객을 기다리지 마세요!

더 이상 피크타임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모를 이용하는 승객은 언제나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3 단거리도 얼마든지!

바쁜 시간, 단거리 운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리모 포인트는 단거리일수록 더 많이 적립되니까요.



당 연합회 “교통안전공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요청 국토교통부 회의 통해서 해결!

지난 10월 16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연합회 및 시·도조합에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공단은 '14. 9. 1부터 '14. 9. 30.까지의 운행기록을 '14. 10.24까지 제출할것과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이 공문을 접한 연합회 및 시·도조합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연합회는 이사건이 물고을 파장을 크게 우려하여 운행기록 제출과 관련 있는 7개교통단체 실무자를 긴급 소집하여 '14. 10. 20. 당연합회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교통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볼 때 운행기록 자료를 수집·전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는 너무나 큰 부담이러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적극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교통단체는 10. 2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를 방문, 회의를 통

하여 '정부 당초 약속대로 사고다발 및 중대사고 사업자에 한해 자료요청을할 것'과 '기간내 자료제출 미이행 시 모든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권 남용으로 수용할 수 없으니 철회할것과 강행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실행' 등을 시사하는 등 강력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은 '과태료 부과'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분석 및 활용도 높이는 차원으로 명시한 것이며 하지 않을 계획'

'교통안전공단 공문 재발송'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는 삭제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주 중 시달 예정' 이며 '교통단체는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 등 성의표시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시·도조합은 크게 안도하고 반색하는 분위기가.

강원도 대중교통 취약 마을 “버스요금으로 희망택시 이용”

- 도내 5개 시·군 『희망택시 시범사업』 선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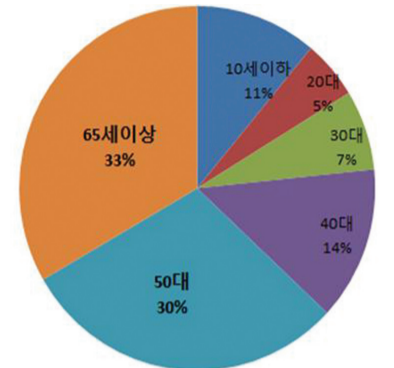
강원도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희망택시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희망택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5개 시·군, 15개 마을로 1,073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선정된 시·군에는 도비 126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희망택시 시범사업』 선정 지역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마을버스 운행 요구가 있었지만, 해당 시·군 및 버스업체에서 진입도로 및 회차지 등의 사유로 시내·농어촌버스 운행의 난색을 표명하였던 지역으로,

선정지역의 인구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한 65세이상 노인들의 비율이 전체인구에 약 33%로 나타났으며,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하여 평균 4.8km의 거리를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선정 마을의 주민들은 “이제 멀리 있는 승강장까지 걸어가지 않고 읍·



▲ 선정지역 인구 구성비.

면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였다.

희망택시는 마을별 집결장소(마을회관 등)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주민들은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택시업체에 운행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강원도는 『희망택시 시범사업』 선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평가 하여 '15년도에는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마쳐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2014년 8월 28일 (목)전남 순천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지난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을 초청하여 개인택시 업계의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 개인택시조합 여근하 이사장의 주선하에 시·도조합 이사장과 전남 순천시, 곡성군지부 개인택시사업자 약60여명이 참석하여 이정현 의원에게 축하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정현의원은 인사말을 통하여 당선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그동안 지지해준 선·후배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제주조합 이치

현 이사장은 택시발전법 내용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음에도 개정이 되었다고 말하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안)에 관하여 택시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운전자 알선금지외국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11인승 이상 차량에 대하여 알선을 허용하고 3,000씨씨 이상 고급차량도 허용한다면, 택시가 설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정현 의원께서 현행법령 유지를 골자로 잘 검토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부산조합 박권수 이사장은, 택시연료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 감차비용으로 활용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전국16만5천 조합원은 청와대와 교감할 수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에 많은 기대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두가지 현안문제를 간곡히 건의하였으며, 택시연료인 LPG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감차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주기 바라고, 15년전에 렌터카 불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얼마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그 조항을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택시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므로 이정현의원께서 반드시 막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이정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택시민원을 많이 들어왔으므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당내에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개인택시업계가 일방적인 법률 개정등으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알찬 혜택을 모두 담은 신한카드와 함께 하세요!

주유 즉시 유가보조금 할인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포인트 적립까지,
개인택시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확 덜어드립니다.



편리한 유가보조금 지급 서비스



충전소(주유소)에서 결제 시
유가보조금 자동 지급
[LPG] 리터당 239.85원 (간이과세자)
리터당 221.36원 (일반과세자)
[경유] 리터당 345.54원

구분	카드전표 표시금액	유가보조금 지원
신용카드	카드전표상에는 지원받을 유가보조금/유류세가 할인	카드대금 청구시 유가보조금/유류세 할인 후 청구
체크카드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유가보조금/유류세가 표시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유가보조금/유류세 할인 후 인출

신청방법

- ARS신청 : 080-800-0001(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
4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직장(주택) 전화번호 + # >
이동전화번호 + # > 완료 > 1주일 내에 신한카드에서 happy call
- 방문 접수 : 신한카드 지점, 신한은행 영업점, 우체국, 전국 16개 시도 개인택시조합
- 우편 접수 : 서울 중구 소공로 70(충무로1가) POST TOWER,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 담당 앞 우)100-709

신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카드의 특별한 혜택

- OK Cashbag 적립 서비스 : SK 충전소 1.0%, SK 주유소 0.3%
- 단, 월 100만원 한도 내 적용되며 SK 충전소의 경우 OK캐시백 멤버십 카드를 동시에 제시할 경우 멤버십 카드를 먼저 인식하여 0.5%만 적립되오니 이용시 주의 바랍니다.
- SK주유소, SK충전소를 제외한 주유소나 충전소 이용시
마이신한포인트 0.5% 적립
- 전 주유소 및 충전소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 이용시
마이신한포인트 0.3% 적립
- 마이신한포인트로 주유한 금액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OK Cashbag 가맹점 이용시 **최고 5% 적립**
- 상세문의 : SK클래넷 고객센터(Tel. 1599-0512), www.okcashbag.com 참조
- 제휴 관련 서비스 내용은 제휴사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세한 안내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이자율은 연체일수 및 약정 금리에 따라 23.0~29.5%가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ARS(1544-700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준법감시 심의번호 141021-1222-002 (2014.10.21 현재 유효)

2014년 3/4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를 산정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감차보상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78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 산정기준 및 절차, 감차계획 수립·변경 절차,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및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14. 07. 28)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택시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의 특성에 관한 사항, 차고지 및 택시 승차대 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 시 사업구역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및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절차를 정함.

□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 및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 등을 정하고,
- 해당 목표 비율과 사업구역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 등을 활용하여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 산정을 위한 계산식을 규정하며,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 산정 및 재산정 시기 등을 정함.

□ 감차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및 내용

- 사업구역이 시·도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가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 사업구역이 시·군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시·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하며,
- 감차계획에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 감차 규모 및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감차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 등

-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고,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 또는 군이 있는 시·도에는 시·도 감차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며,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및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과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을 뺀 금액으로 하고,
- 해당 출연금은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출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및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를 뺀 대수로 산정하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며,
-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고,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하고,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 및 택시 과잉 공급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며, 해당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사업 및 택시공영차고지의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운용 및 감독 등

-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관리기관을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택시 표시등을 이용한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규정함.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 [별표2]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 할 경우 : 운행정지는 1회 90일 / 2회 180일 / 3회 면허취소(2년내 위반행위 횟수 산정)
- 기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인 경우 : 운행정지 1회 60일 / 2회 90일 / 3회 이상 180일(1년 내 위반행위 횟수 산정)
※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질병으로 대리운전한 경우 제외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1회 위반 20만원, 2회 위반 40만원, 3회 위반 이상 60만원)를 부과함.
- 승차거부 : 2년 내 위반행위 횟수 산정
- 기타(부당요금/합승/영수증 미발급) : 1년 내 위반행위 횟수 산정

○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차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78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5526호, 2014. 7. 28. 공포, 2015. 1.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하는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14. 07. 29)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내용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규정

- 기본계획 변경 사유를 ①국내 외 사회 경제여건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②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 변화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
-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유를 ①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

□ 재정지원 가능 사업

- 법률에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외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보조가 필요한 사업을 ①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②택시운송사업자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③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구·연수 사업, ④택시고급화 및 낡은 차량 대체 사업, ⑤경영서비스 평가제 우수사업자 및 종사자 육성 사업으로 규정.

□ 택시 운행정보 범위 및 자료의 공동 이용

-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운행기록 정보(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와 미터기 정보(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로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모든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사업자 단체와 공동 이용 가능.

□ 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별표)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80일(1차), 자격취소(2차)를 부과함.

○ 연합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연합회 건의서(‘14. 04. 02)를 제출 하였으며, 그 주요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의내용

문제점	건의
□ 택시 실거래가격 고시제도 도입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및 택시운송사업비자별로 구분하여 감차계획 수립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양도·양수 시 거래되는 현실 가격을 시·도의 공보에 고시	□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 수준을 정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별, 업종별 실거래 가격 고시 의무화
□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인원 10인 이내로 명시할 경우 -사업구역별, 시·도별 자치단체의 추천인원 증가로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 우려 -국회와 정부의 합의사항이며, 정부발표(‘13.12.31) 내용으로 신뢰성 문제	□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명시
□ 택시감차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감차보상지역의 현실가격 보상	□ 양도·양수 시 거래되는 현실가격을 반영하는 감차보상 건의
□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 등 과태료 처분이 상향조정 될 경우 -횟수에 따른 처분 기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과도한 처분으로 사업유지 불가능 -일반택시와 비교하여 개인택시는 사업자 및 운전자 동시 처분으로 과중한 처분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용 -과태료 처분완화(1회 30만원, 2회 40만원, 3회 50만원)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처분할 경우 -행위자 처벌 법률 원칙에 위배 -대리운전자의 지도·감독 불가능으로 사업 처분 증가 예상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처분 규정신설 반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건의내용

문제점	건의
□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 등 자격처분을 상향조정 될 경우 -개인택시는 과태료 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동시에 받게 됨으로 일반택시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처분 -버스 등 다른 여객운송사업과 형평성 위배	□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 미발급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처리정보가 도입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처리 정보 무단 사용 금지 규정 신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 등 10인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제출(14. 7.30)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자 면허 없이 고급차량으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고 있는 일명 ‘콜뛰기’는 택시 영업 질서를 흐릴 뿐만 아니라 비보험,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콜뛰기’ 현장을 적발하여도 운전사와 승객이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특히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콜뛰기’의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콜뛰기’ 영업을 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이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콜뛰기’ 영업을 근절하려는 것임

3 개인택시 운행거리 제정 관련 건의

○ 연합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 개정(14. 05. 21)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신설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검토 중임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의 구분별 운행거리(예: 90만Km)에 도달한 경우 사업의 구분별 차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을 대폐차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택시는 차령을 폐지하고 운행거리 신설, 모든 개인택시 차량이 공포시점을 기준으로 차령제도 개선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음.

건의 주요내용

- 개인택시 차령 폐지
- 운행거리는
 - 개인택시(경형·소형) : 100만km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120만km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150만km
- 차령제도 개선 적용 시점 및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공포 시점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적용대상에 포함 시켜야 함.

4 대형·고급형택시 도입 활성화 관련 건의

□ 연합회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최근 택시 연료인 LPG 고유가 상황 지속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급등하여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콜밴·렌터카, 심지어는 우버 등 유사 업종의 불법 택시영업 만연으로 인하여 업역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받고 있어 택시산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 택시업계에서는 대형(수요응답형) 및 고급형 택시 등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택시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나, 승차인원 및 택시요금 등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현행 여객법령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승차인원 관련 (여객법 시행규칙 제9조) : 대형택시,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한정)
- 택시요금 관련 (여객법 제8조) : 택시요금의 경우 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인가제 형태로 운영
- 별칙규정 (여객법 시행령 별표3, 별표5) :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할 경우, 사업일부정지 5~2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등
- ※ 현행 여객법령상의 규정은, 대형(수요응답형) 또는 고급형 택시 도입 등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음.

건의 주요내용

- 대형택시 승차정원 상향조정(현행 6~10인승 →개선 6~13인승)
- 3,000cc 이상 고급형택시에 한해 협정요금제 도입

5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제완화 적극대응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노·사 4단체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를 정부에 계속 건의하여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알선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이에 택시노사 4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성명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송부('14. 8. 29)하였음.

□ 연합회는 정부가 최근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하였음.

- 지난 3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택시감차정책의 가시적 성과, 택시시장 안정화 등을 보아가며 추진” 하기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공급과잉 20% 이상인 현실에서 택시업계의 의견을 도외시키고 렌터카 운전 알선을 확대 허용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택시업계를 공멸시키는 심각한 정책임.

- 그동안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은 단순히 자동차 임대업자에 불과한 렌터카의 불법여객운송을 조장하고 택시업계의 업역을 침해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지난 수년간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이에 따라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음.

- 특히, 택시의 만성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택시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 확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본래 취지에 위배되고, 또한 불법여객운송행위 증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 자명하여 불임과 같이 16만 개인택시업계의 총의를 모아 반대의견을 제출하오니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실 것을 국무총리실(규제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국토교통부 등에 아래와 같이 건의('14. 8. 29, 9. 15) 하였음.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에 대한 의견

I. 현 황 (주요내용)

-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허용 검토
-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
 - 외국인·장애인·고령자(61세 이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기임차 법인(6개월 이상)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전면허용으로 전환 예정
 - 관광, 장거리운행 등을 통한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
- 경제관계장관회의('14. 03. 27) 결과
(추진 방안) 렌터카 이용자 불편 해소, 렌터카의 택시화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렌터카 운전자 알선대상 범위 조정방안 마련(국토부)
 - ▶ 택시감차정책의 가시적 성과, 택시시장 안정화 등을 보아가며 추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14. 8. 29)
 -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허용
 -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알선을 가능토록 허용

□ 전국경제인연합회(규제개혁 종합건의 2014. 7)

-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금지 개선
 - (1안)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폐지
 - (2안) 법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합법화(6개월 기간 제한 삭제)

○ 지난해 국회에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허용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보류

□ 정부에서 발의한(13. 6.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렌터카 운전자 알선허용에 대하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3. 12. 12)에서 보류시킴

-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경우, 알선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대여한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시켜주는 영업형태를 띠게 되어 콜택시와 거의 유사하면서 오히려 사업구역 제한만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콜택시로 변칙 운용 예상

○ 렌터카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여객법령 개정 추진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개정안 관한 청원(1999. 03. 15)

- 청원인 : 유병우외 2562인(충남개인택시조합)

- 소개의원 : 김현욱의원, 정일영의원외 23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금지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부분이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한 자동차대여약관을 악용하여 유상운송 등 변태영업 자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00. 01. 29)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금지 근거 마련(제35조)

다만, 외국인·장애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허용

○ 우제창의원 대표발의 등 19인이 서명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 국회제출(2006. 4. 5)

- 대여사업자의 불법 여객유상운송행위 및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 부과

·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 근거 규정 신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07. 07. 1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08. 06. 13)

· 대여사업자의 불법여객운송행위 및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 사업일부정지(90) 또는 과징금 180만원

II. 문 제 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외국인·장애인·고령자(61세 이상) 등은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렌터카운전자 알선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운전자 알선을 확대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근본취지를 훼손시키면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여객법에 위배됨.

□ 운전자 알선을 확대할 경우 운전자 고용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는 우버택시, 대리운전과 유사한 새로운 업종 탄생

▶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를 고용하고 이를 통하여 알선하는 행위가 정당화 되어 새로운 형태의 운전자 고용제도 탄생이 우려 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행정처분이 어려움.

□ 개인택시업계에서 국회청원으로 운전자 알선 금지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도외시 하는 것은 여객운송질서를 문란 시키는 정책임.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부분이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한 자동차대여약관을 악용하여 유상운송 등 변태영업 자행하고 있어 여객운송질서를 바로잡고자 추진하였으며

▶ 개인택시업계에서 김현욱의원, 정일영의원외 23인을 소개의원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개정안 관한 청원(1999. 03. 15)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결과 운전자 알선범위는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인데 이 제도의 배경을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정부정책은 택시업계에 대한 역차별임.

□ 운전자 알선범위가 확대될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약관 개정이 예상될 것이며, 이를 악용하여 유상운송 등 변태영업 자행할 것이 자명함.

□ 지금도 영세한 렌터카 업계는 여객운송질서 문란과 사회문제 야기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렌터카의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만연하여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자와 택시운전자들 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음.

▶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일선 감독관청의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렌터카 업계는 이를 악용하여 불법영업을 자행

▶ 심야시간대나 일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렌터카 불법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운전자 알선 폐지·완화는 영세사업자의 불법여객운송행위만 증가하여 택시운송업종간 마찰만 증가

□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주목적인 자동차임대업에 전념해야 함에도 운전자모집공고를 통하여 모집된 운전자나 임차인들이 임대계약제도를 악용하여 대여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객을 알선하고 있어 여객운송질서를 파괴하고 있음.

□ 대여사업자는 영업소 등에서 렌터카 홍보스티커 및 전단지(영업소전화번호 표기)를 제작, 식당, 다방, 술집, 아파트 밀집 등지에 배포하여 주요 고객을 확보하여 대여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영업소 등에서 자행하고 있음.

▶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택시사업자간의 승객확보 차원에서 끊임없는 마찰과 대여사업자(운전자)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운송질서 문란 및 대승객 서비스질 저하와 함께 불법, 탈법 운수사업의 사각지대로 전락

□ 요금인하로 주요 승객을 확보하여 택시요금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

□ 대여자동차는 신고제이므로 계속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증가 추세에 따라 불법여객운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III. 건 의

□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

□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14. 10. 24, 시행 2015. 7. 1)
- 국토교통부는 모범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규제 가운데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차량종류 변경을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기존 택시사업자가 조합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여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창출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여 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차량 종류변경 기준 완화 및 관련 규정의 폐지
 -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할관청의 인가사항이었던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운행인가), 의무사항이었던 차종 표시, 무선호출통신망 구성, 운전자 복장, 운전자 교육 등 관련 규정을 삭제
- 모범택시 양도 시 향후 모범택시 운행인가 제한 폐지
 -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받더라도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하고 추후 택시 양수 시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운행인가 제한 폐지
- 모범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삭제
 -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결격사유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 삭제
- 모범택시 운전자의 복장 의무착용 규정 완화
 - 관할관청이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모범택시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완화
 - 모범택시 인가 후 모범택시 의무교육을 승무 전이 아닌 관할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도록 함
- 모범택시 사업자의 행정처분 가산규정 삭제
 - 모범택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 폐지

□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14. 10. 23, 시행 2015. 7. 1))
-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의 규제조항 중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 택시 외부에 호출번호 표시의무 규정 삭제
 - 호출설비를 갖춰야 하는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가 외부에 호출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노사 4단체는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정 현행유지를 건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공포(‘14. 10. 14)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 현재 외국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斡旋)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과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개정

7 운전적성정밀검사 강화에 적극 대응

□ 연합회는 박수현의원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14. 10. 13) 관련 보도자료 내용 중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검사 강화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줄이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고령운전자의 자격과 관련한 제도개선은 업계의 생존권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며, 자영업자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제에 해당함을 적극 대응하였음. 보도자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택시운전자 7명 중 1명 65세 이상 고령자, 대책 ‘無’
- 고령운전자 치사율,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배
- 고령화 시대 흐름에 따른 제도개선과 대책 필요

6 택시운송사업 국토교통부 훈령 공포

● 문제점

→ 적성검사강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명시할 경우 “헌법 제37조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 고령운전자의 지각능력 판단은 개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연령 등으로 인한 자격제한은 택시종사자들의 생업권과 관련한 반대가 예상되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련 현행 법규도 문제가 많은데 이의 해결 없 이 또 하나의 규제를 강화 하는 것은 택시종사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

→ 연합회 추진사항

→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질의 박수현의원 보도자료(‘14. 10. 13)운전적성정밀검사 강화와 관련 택시업계 반대 건의서를 박수현, 이노근, 김태원, 오병윤 의원 등에 제출(‘14. 10. 14)

- 국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줄이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고령운전자의 자격과 관련한 제도개선은 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신중히 접근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 제출

● 체험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부과 추진 및 대책활동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의원(충남 공주시)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체험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있어 항의방문 및 업계의견 전달

- 법령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는 답변(‘14. 10. 16)

→ 국정감사 시 업계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질의와 관련 정성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경기 양주 동두천)실 방문(‘14. 10. 16)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 사전 통보 제도개선 등 현안문제 질의 예정.

● 개선방안

→ 택시를 비롯한 버스, 화물 등 교통관련 단체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개정을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따라서 현행 관련법규를 먼저 개정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주기 조정 및 적성검사의 내실화는 추후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친 후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의료연수중급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보험연수원에서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을 포함한 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공제조합 등 육운공제 5개 단체 대인보상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연수중급과정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동 교육 과정의 전 단계인 의료연수초급과정을 기 이수한 직원들이 참석하여 재활의학, 척추손상, 상지골절, 하지골절, 두부외상, 척추손상의 총 6개 과목으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별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강의를 맡아 기초의학 이론 뿐 아니라 최신 의학 동향

및 배상의학계 이슈 등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처음 교육장에 방문하기 전 5개 공제 조합으로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인원이 많아 다소 강의가 어수선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내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강의시간 내내 교육 참가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고, 강의 뿐 아니라 교육생들이 하는 질문에도 집중하며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얻어가려는 학구열에 불타는 교육생들의 열정이 교육일정 내내 이어졌다.

강의 중간중간의 쉬는 시간에도 타

공제조합 직원들과 서로 교류하고 토론하며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직원들로 활기를 띠었으며, 강사를 직접 찾아가 강의 시간 내 못다 한 질문을 하는 교육생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직원은 “다른 공제조합 직원들과 친분을 나눌 수도 있고, 각 공제조합의 보상시스템 및 보상사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교육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타 공제의 한 교육 참가자는 “근무환경과 여건이 비슷한 육운공제조합이 한데 모여 교육을 진행하니 교육의

주제와 방향이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거 같다.”며 교육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친 후 평가가 진행되어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이수여부가 결정됐다.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참가한 직원 17명 모두가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 평가 결과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매년 단독 교육 뿐 아니라 타 육운공제조합과 합동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교육이 의료연수과정으로 초급, 중급, 특과의 3단계로 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적, 수준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실시되는 합동교육은 직무교육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는 한편 육운공제조합 직원들이 만나 친분을 쌓고 서로의 업무 노하우를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이제 2014년도도 어느새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겨울로 가는 문턱, 조금 쌀쌀한 날씨에 몸을 움츠리며 교육장 취재에 나섰으나, 이내 공제조합 직원들의 열정과 패기에 움츠린 몸과 마음을 활짝 펼 수 있었다. 공제조합 직원들의 이 뜨거운 에너지가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 뿐 아니라 육운공제조합 전체의 발전과 번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금번 취재를 마무리 했다.

‘자동차 공제약관 일부개정’ 시행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14.9.1.)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공제조합에 관련 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제약관을 개정 시행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험회사의 과실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보험료 반환기일을 현행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130%까지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 「영업용 차량」 등 사고로 파손되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되는 차량의 출고연수에 제한이 있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

또한 대차료(렌트비)의 지급기준

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구체적인 의미를 약관에 정의하여 대차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였고,

◦ 「통상의 요금」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규정 「민법」의 개정(‘13.7월)사항을 반영하여 보험금(위자료 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였다.

이번 개정 된 자동차 공제약관은 2014.10.15일 사고일 부터 적용(단, 보험료 반환 시 지급기일 단축은 '14년 9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며, 약관 개정에 따른 공제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로 개정된 공제약관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예방감소의 최선 다해야

Q. 2014년 공제사고 중 6명의 사망자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민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공제약관의 변경,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등으로 자동차사고 보상의 범위와 보상금 단가 상승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향후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요?

A. 1)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고증가의 원인을 분석하면 공제계약조합원 수입의 감소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평균기본수입 감소로 조합원의 영업시간이 늘어나 장기간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운행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고, 마음에 여유 또한 없어지는 것이 큰 이유일 것입니다.

2) 시. 군지부장 및 임원, 공제조합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교통사고에 방감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도 교통사고 감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3)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할인할

증 제도를 등급제로 전환하면서 우리 충남지부 5%의 공제분담금(보험료)을 인상하였고, 보유자금의 축적, 흑자상태의 지속으로 안정권의 경영상태가 유지되면,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기본 분담금을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당해년도에 다수의 사망사고와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장애발생환자, 외제차량의 손해율이 늘어 기본 분담금을 올려야 할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수입 외제차량 손해율이 급속히 늘어 수입 외제차량과 교통사고 발생시 공제조합지부 자체적으로 처리요령과 손해감소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보상팀 전직원이 숙지하여, 매뉴얼대로 보상처리하며, 공제금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향후 보상서비스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 할 것입니다.

- 앞서가는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 보상실명제와 신속.정확한 서비스
- 조합원과 하나 된 서비스에 목표를 세우고 매진 할 것입니다.

인터넷 <http://www.개인택시.org> 으로도 기사확인 가능합니다.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 카드



연회비
유류 국내전용 면제
일반 국내전용 5,000원(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한국석유공사 공시가 기준으로, 국제형 및 국토해양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일 4회 한도
- 부재일 이용권,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해당건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최고 1% M포인트 적립

전국 400여 개 하이카프라자 지정점에서 자동차 부품 및 용품 최고 50% 할인(카드 최초 발급 시 동봉된 쿠폰 지참)

종합건강검진 40~60% 할인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9.5%의 연체이자율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이용금액의 0.5%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홍보·지도차장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김도길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5카드 오토 포인트+BLUE/Qmembers 포인트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41010-165336호(2014.10.27)



현대카드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000



조합탐방

광주조합을 가다

내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앞두고 시재정지원 받아 노후 네비게이션, 택시 표시등 교체추진



“조합원의 단결과 화합이 조합발전의 성장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조합은 오랫동안 이사장 선거 후유증으로 반목과 대립으로 조합발전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7대, 8대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9대선거에서 힘겹게 당선된 저는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화합을 일궈내기 위해 투명경영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우리조합은 화합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김문옥 이사장은 반목과 대립하던 조합이 단결과 화합으로 변모했다고 자랑한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조합행사때마다 판을 치던 무질서는 사라지고 어떤 단체나 조직보다도 질서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때에는 흔히 볼 수 있던 새치기가 사라지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치루어졌고 올해 실시한 시설점검때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4,800여명의 조합원이 점검일자와 시간을 엄수하여 수준높은 질서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우리 조합의 밝은 미래를 엿볼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 탄탄 복지조합

광주조합은 광역시의 행정여건이 조합경영을 직영할 수 있는 잇점을 살려 일찍부터 복지조합 실현에 힘써왔다.

2001년 북구 본천동 2,200여평의 넓은 대지에 현재의 조합건물을 신축하면서 LPG충전소도 함께 신축 LPG충전소를 직영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SK가스로부터 11억원의 시설자금을 빌려 20억을 들여 자체 충전소를 마련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2008년에는 광산구 신촌동에 충전소를 임대하여 제2충전소를 확장하고 동구에 있는 동구충전소와

는 제휴하여 충전소를 늘려 조합원들이 어디서나 LPG를 충전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강화했다.

충전소에는 자동세차기, 셀프세차기 등이 설치되어 개인택시 차량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조합건물에는 경정비공장, 부품판매장을 운영, 조합원들이 저렴한 가격에 차량수리를 공급받고 있다.

광주조합은 직영충전소 개업당시 L당 20원씩 주던 적립금을 2002년에 37원, 2004년에 40원, 2011년에는 75원으로 대폭 올려 2014년 상반기까지 조합원에게 60억6,8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조합은 이밖에도 신용협동조합을 운영, 조합원들이 좋은 조건으로 예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복지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 운송여건 개선 추진

광주조합은 광주시청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1,000대의 브랜드 택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택시의 길안내를 하는 네비게이션이 장착한 지 7년이 넘어 노후화돼 성능이 크게 떨어져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교체할 수 있도록 1,000대에 대한 교체비용 4억원을 지원하여 주도록 광주시청에 건의했다.

김문옥 이사장은 국제대회를 앞두고 국제도시로서 미관상 개선을 위해 무분별한 현재의 택시표시등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히고 기왕에 현재의 택시승강장을 승객편의를 위해 개선하거나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조합은 에어백 설치 재정지원, 블랙박스 교체비용 등 택시영업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여 주도록 지난 8월 광주광역시에 건의서를 접수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의회에도 택시승차대 부근 주정차단속 카메라 이동 및 단속 유예 등 택시업계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를 10월에 접수하고 김이사장이 직접 시의회를 방문 의회위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 감차보상 촉구

광주조합은 과잉공급된 택시를 감차하지 않고는 운송여건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조속한 감차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김문옥 이사장은 “설훈 의원과 이이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LPG부가세 면제를 기본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감차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 이사장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광주조합이 독자적으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조속히 교통총량제를 실시하고 시단위 감차위원회를 구성 감차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택시운행 서비스 개선

광주조합은 4,800여대의 개인택시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택시로 태어나기 위해 전 조합원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운동을 펼친다.

특히 내년 7월에는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는 만큼 전 조합원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광주광역시에 적극 협조하고 조합차원에서 손님맞이 계획을 세워 빈틈없는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택시안심귀가 서비스를 광주조합은 모범적으로 운영, 안전한 개인택시상을 주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우고 있다.

◇ 흑자 공제조합 만들기 총력

안전하다는 광주개인택시 사고율이 지난해 23%였는데 올해는 6월말 현재 22.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억7,300만원의 흑자운영을 하였으나 손해율은 8.3% 후퇴하여 당초 예상했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는 누적적자에서 벗어나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기틀마련을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 공제지부는 사고감소 방안으로 안전운전 문자메시지를 전 조합원에게 수시 발송하고 교통질서 계몽활동 강화, 교통안전공단 연계 가두캠페인 등을 실시 하고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상업무 처리 방법 개선 일환으로 직원보상교육을 실시 손해율을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있다.

공제 광주지부는 김문옥 이사장의 진두지휘로 지난 손해율 81.30%를 적정 손해율 70% 달성목표로 누적적자 10억여원의 해소를 위해 조합원은 안전운전을 강화하고 공제지부는 알뜰한 보상업무 실현을 다짐하고 있다.

〈글·사진 김관술〉

광주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조재영 이사



변용암 이사



박남규 이사



국승두 이사



정무경 이사



전영곤 이사



조동용 이사



이길로 이사



황익필 이사



고영수 이사



김성용 감사



김문옥 이사장님



조준호 대의원



하태수 대의원



오택규 대의원



김길겸 대의원



김영대 대의원



서한택 대의원



백기수 대의원



김용곤 대의원



김성현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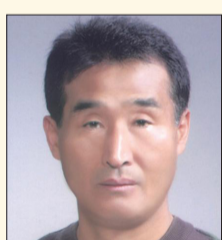
김성수 대의원



김명식 대의원



박범규 대의원



안두환 대의원



강형석 대의원



장현종 대의원



강대호 대의원



홍주 대의원



남영호 대의원



김재환 대의원



유성수 대의원



차현대 대의원



안중민 대의원



조규환 대의원



신현섭 대의원



김철환 대의원



전상원 대의원



이신행 대의원



서학열 대의원



주인호 대의원



서태종 대의원



성기운 대의원



충남조합을 가다

충남 시·군 재정지원 받아 내년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추진



충남조합에는 택시운송여건에 큰 변화가 생겼다. 대전시에 있던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옮겼다. 충남도청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지점 300만평에 조성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교육청, 경찰청 등 도단위 기관도 함께 옮겼다.

농협, 적십자지부 등 이전 준비를 하고 있고 도단위 기관이 이전하면서 도단위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들도 옮겨 인구 유입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서 유동인구까지 따지면 1만명의 유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택시운송여건이 크게 좋아졌다.

그런데도 도청소재지에서 4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예산군지부 조합원들의 운송수입은 하루에 5만원 벌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4191명의 조합원으로 운영하는 충남조합은 천안시 등 시지역 조합원들은 하루 운송 수입이 10만원을 넘는데 예산군 등 농촌 지역은 5만원도 안되어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운송수입 양극화는 엄청난 셈이다. 도 조합과 시·군지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데다 조합원들의 운송수입 양극화까지 겹쳐 어렵게 조합을 경영하는 김해경 이사장은 운영의 묘를 찾기에 고심이 깊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정

도청이나 시·군청에서 택시업계가 재정지원을 받기는 버스에 비해 쉽지 않다.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택시는 고급 교통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 택시도 대중 교통으로 편입되기 위한 입법 투쟁을 벌여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좌절되었다.

이에 충남조합은 법인택시조합과 합동으로 충남도가 택시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올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도비, 시·군비 지원의 조례로서 법률적 기반을 확보했다.

◇ 영상기록 장치 교체 사업 추진

지난 2010년 법인택시조합과 공동으로 영상기록장치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와 시·군의 재정지원을 받아 4191대의 조합원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4년을 넘게 지나면서 영상기록 성능이 떨어져 교체가 시급해졌다.

충남조합은 영상기록 장치 교체 비용 7억6천5백만원 중 선형적으로 충남도청으로부터 1억5천3백만원의 재정지원을 확보했고 15개 시·군지부도 4억5천9백만원의 재정지원을 시·군으로부터 확보하여 조합원 자비부담금 1억5천3백만원을 합쳐 2015년에는 영상기록장치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지능형 브랜드택시 사업도 완료에 따른 브랜드 노후화로 인한 2차 정보화사업 추진도 활발

충남조합은 브랜드택시 사업을 통해 운송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시·군지부별로 브랜드택시사업을 추진 2008년 천안지부를 스타트로까지 완결했다.

천안시 FAST콜(1,231대), 공주시 시티콜(89대), 보령시 머드콜(190대), 아산시 스마트콜(362대), 논산시 예스민(197대), 부여군 굿드레콜(120대), 홍성군 미래로(159), 서산시 서산브랜드택시(228

대), 태안군 꽃다지콜(43대), 금산군 비단뽕(73대), 세종시 도화콜(103대), 당진시 당진브랜드콜택시(208대), 계룡시(22대), 서천군(123대), 청양군(48대), 예산군(167대)등이 각지역에서 운행중에 있으며 이로써 충남의 전 시·군이 브랜드사업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러 택시브랜드사업이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하루에 근 20여시간 항시 장비를 사용하다보니 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도민에게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 하고저 브랜드 노후화로 인한 2차 정보화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 든든하고 탄탄한 조합조직

사업조합과 공제조합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충남조합은 김해경이사장과 17명의 임직원이 하나로 똘똘뭉쳐 운영되고 있다.

조합은 김해경 이사장의 철저한 예산절감이란 경영철학명분아래 전무이사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박형순 기획실장의 진두지휘아래 박문철 업무계장, 황윤호, 이미영, 유진씨등의 5명의 직원들이 총무와 업무를 나누어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시·군 지부를 상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합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말고도 조합과 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사업이나 체육행사까지도 빈틈없이 처리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공제지부는 보상1, 2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만탁 부지부장이 총괄하고 있다.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처리에 중점을 두고 보상처리, 보상상담, 의료심사까지 모든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제지부는 조합원들에 대한 안전운전캠페인

을 지속적으로 벌여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는 공제업무에 중점을 두고 역동적인 활동을 한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의 2015년을 향해 달려가는 충남조합에는 김해경 이사장을 지원하는 김명석, 노희견, 김사곤 3인의 부이사장과 홍선기이사를 비롯한 8인의 이사진, 김성규 지부장을 비롯한 15명의 지부장, 권오형 대의원을 비롯한 29명의 대의원, 우민영·권오길 2명의 감사등의 뒷받침이 충남조합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있는 것이다.

김해경 이사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임원진은 이사장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결의해주고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여 밝은 미래의 충남조합을 건설하는 성장판과도 같은 존재로서 앞으로도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것에 틀림없다.

◇ 흑자 공제 전환 위해 총력

김해경 이사장은 “2013년 1월 1일부터 할인할증제도를 등급제로 전환하면서 할 수 없이 5%의 공제분담금을 인상하면서 보유자금의 축적으로 흑자 공제가 실현되어 경영 상태가 안정되면 조합원의 어려운 경제상태를 감안 기본 분담금을 인하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6명의 사망사고와 대형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오히려 기본 분담금을 올려야 할 처지입니다. 15개 시·군 지부장과 공제 직원이 비상체제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보상처리과정에서 공제금 누수가 없도록 보상 실명제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합원들의 안전운전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승객저변확대 추진

도시와 농촌간의 운송수입 양극화를 고민해온 김해경 이사장은 3년전부터 교통소의 지역에 사는 고령 인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요금을 부담하는 ‘복지형 농촌택시’제도를 충남도청에 제안했었다.

비록 도조합의 제안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서천군과 아산시에서 ‘희망택시’와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복지택시를 운행했다.

서천군과 아산시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조건때문에 택시에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으로 대중교통 소외주민 교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희망택시’와 ‘마중택시’를 피웠다.

교통약자인 오지 지역 노령인구의 반응은 대단했다.

결국 희망택시와 마중택시는 오지주민에 대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경영난에 처한 농촌택시에게는 승객을 마련해 준 교통정책이 되어 일거양득 교통정책으로 전국 각지에서 환영했다.

영동하게도 시·군에서 실천되었지만 ‘복지형 농촌택시’ 제도를 충남도에 일찌감치 제안 김이사장의 선견지명은 충남도 전국 지역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서천군과 아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택시는 공급과잉으로 택시 댓수를 감차해야하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도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의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춰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이사장은 “복지택시를 농촌지역 군단위별로 확대하는데 도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한다.

〈글·사진 김관술〉

충남조합 발전을 이끄는 시·군 지부장



김명석 부이사장



노희견 부이사장



김사곤 부이사장



권오형 이사



홍선기 이사



김광열 이사



임현상 이사



강봉주 이사



황길평 이사



장대갑 이사



이재열 이사



권오길 이사



우민영 감사



김성규 천안시 지부장



임선규 공주시 지부장



홍성길 보령시 지부장



강준규 아산시 지부장



이희호 서산시 지부장



전경철 금산군 지부장



유현준 세종시 지부장



김용성 논산시 지부장



이종도 부여군 지부장



노희견 서천군 지부장



유철조 청양군 지부장



조길상 홍성군 지부장



황규열 예산군 지부장



김용택 태안군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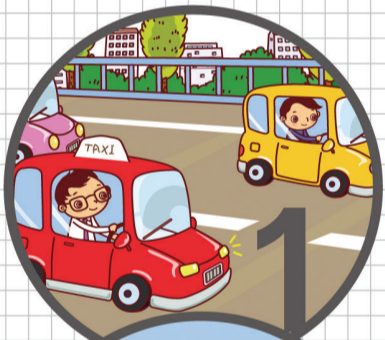


이재열 당진시 지부장

안전운전 365일



다음 4가지 사고만 예방하여도
교통사고 확!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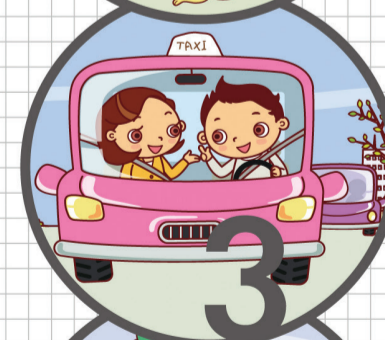
방향 지시등 켜기

자신이 진행할 방향을 다른 운전자에게 표시하면 상호간에 신뢰를 주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향등 켜기,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도로 위의 약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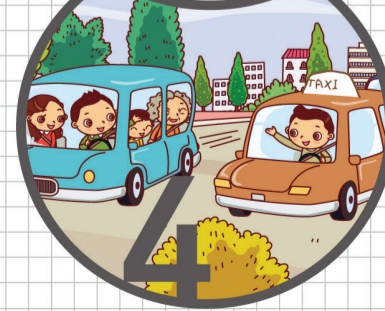
운전중 휴대전화 및 DMB 시청하지 않기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한곳에 주의력을 빼앗겨 다른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중 휴대전화 및 DMB 시청은 절대 안됩니다.



전좌석 안전띠 매기

모든 여객 자동차는 뒷좌석까지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매기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지킬수 있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배려운전

영업용 차량의 특성상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선 변경시 꼭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 우 백미러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양보 및 방어 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데스크칼럼

“우버(Uber)와 같은 유사택시영업 반드시 근절되어야”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유럽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진출한 “우버(Uber)”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SNS 등을 통해 기사와 고급 자가용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호출, 이용하는 서비스로 뉴욕, 파리 등에서는 이러한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기사들이 파업과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심지어 폭력사태까지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유사택시영업 방지를 위한 규제를 신설하기 까지 하였다.

“우버”에 사용되는 차량은 대부분 고급자가용자동차나 렌터카이다.

현재도 고급자가용자동차는 유흥가 종사자들을 상대로 여객운송행위가 만연되어 있으나 단속이 수월하지 않아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용 유사운송행위도 큰 문제지만 “렌터카 운전자 알선확대”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3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의 개혁을 위해 개최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하였으나, 렌터카의 택시화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택시 감차정책의 가시적 성과와 택시시장 안정화 등에 따라 추진 키로 하고 규제개혁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혁 지연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지자 8.29일 국

토교통부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즉,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와 결혼식 및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면허없이 자행하고 있는 여객운송행위!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차량제공” 등 상당부분 “우버”에 영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택시발전법”의 핵심내용은 과잉공급된 택시를 감차하는 것이다.

지금 대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부족으로 택시감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이때! 렌터카 운전자알선을 확대하고 “우버” 등 유사여객운송행위가 성행한다면 “택시발전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거니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81조 및 제34조에 위반행위이며, 감차효과를 상쇄하는 것이다. 택시살리기 한다는 정부가 왜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택시정책을 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4년 9월 10일자 CBC 뉴스에 따르면 “우버”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요금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고 보도하였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서 노원구까지 불과 16.74km를 탔지만 요금은 무려 14만2200원이 나온 우버택시 이용자 사연이 소개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거리는 일반 택시로는 할증이 붙어도 약 2만원 안팎이지만 “우버”는 이보다 무려 7배 넘게 나온 것.

해당 피해자가 공개한 우버택시 이용 영수증에는 기본요금 5000원에 거리 2만3900원, 시간 2700원등 도합 3만1600원이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한 수준.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라면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하다.

하지만 여기에 ‘4.5배 피크 타임 할증’ 요금이 무려 11만600원이나 가산됐다. 따라서 우버택시를 이용한 요금은 이를 모두 합해 14만 원을 넘긴 것이다.」

이렇듯 “우버”는 국내뿐만 아니라 진출 하고 있는 전 세계 37여 개국 128개 도시 택시업계와 끊임없는 분란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 택시업계는 과거 1999년부터 시행되어온 “6번형화물자동차”불법 여객운송행위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적·금전적 희생을 감수하였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3번의 헌법소원 제기, 숱한 국회입법활동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렇듯 한번 잘못 시행된 제도나 정

책은 두고두고 업계 간 갈등을 야기하고 택시업계의 희생만 가중된다는 것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염두에 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5만 택시 종사자들은 향후 갈등의 소지가 불을 보듯 뻔한 “우버”는 초기부터 강력히 단속하여 유사운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콜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택시콜센터 구축사업의 2단계로 “단일번호 1333”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업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고 택시운수 종사자의 수입이 조금이라도 증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직도 승차거부, 과속, 바가지요금 등은 우리 택시업계가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고질적 병폐이다. 앞으로도 “우버”와 같은 유사운송행위가 수없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에서 항상 긴장하고 긴밀히 대처 하겠으나 사업자 여러분께서도 대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홍보·지도차장
김도길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대출안내

스마트카드연계대출	모아대출(신상품)
<p>최고 1,000만원이내 연6.50%(변동금리) (이용고배당우대효과 : 연6.19%)</p>	<p>최고 5,000만원이내 최저연6.65%부터 (변동금리) (이용고배당우대효과 : 연6.29%)</p>
<p>※ 택시요금 결제금액 입금통장을 본금고 계좌로 이용(변경) 하시는 회원에 대하여 대출하여 드립니다.</p>	<p>※ 개인 신용도 및 본금고 거래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됩니다.</p>
<p>■ 이용고배당 우대효과는 대출금액 1,000만원 및 최저금리 기준이며, 2013 사업년도 이용고배당 기준입니다. ■ 1회원 총 대출한도는 최고5,000만원 이내에서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마이너스대출시 0.5%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자격 및 대출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조치는 본인이 직접 본점 또는 지부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문의전화 : 02) 423-5087~9 본점 및 각 지부 사무실



가을보약 햇볕, 하루 15~20분만 쬐면 우울증·골다공증 '썩'

‘봄별에는 며느리를 보내고 가을별에는 딸을 보낸다’는 말이 있다. 며느리보다 딸을 위하는 시어머니 마음을 빚댄 속담이지만 의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얘기다. 가을은 봄과 비교해 대기 중에 수분이 많아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 양도 줄어든다.

또한 여름 내내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면서 적응이 된 피부 덕에 햇빛에 대한 피부 자극도 적다. 봄철 햇볕은 일사량이 많고 자외선이 강해 기미 주근깨 등과 같은 색소질환을 유발하기 쉽지만 가을 햇볕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한다. 바로 비타민D 생성이다. 햇빛을 통해 생성된 비타민D는 칼슘 흡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음식을 통해 들어온 칼슘 중 일부는 소장벽을 통해 스스로 흡수되지만 상당 부분은 그냥 통과한다.

비타민D는 이렇게 배출되는 칼슘을 소장벽으로 운반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결국 햇볕만 제대로 쬐어도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은 "가을별을 15~20분만 쬐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D를 모두 얻을 수 있다"며 "비타민D는 몸속 칼슘과 인을 흡수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을별을 적당하게 쬐어주면 누구나 걱정하는 골다공증과 척추압박골절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을별이 뼈 건강에 최고 보약인 셈이다.

비타민D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로,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햇볕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실내에서 활동할 때가 많아지고 야외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선크림 사용, 햇빛 기피 현상으로 제대로 체내에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구루병을 유발하고 경련, 근력 저하, 호흡기 감염 증가, 심장 근육병증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비타민D는 일부 신경과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기 쉽고 기억력이 떨어져 인지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비타민D는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비타민D는 사계절 내내 중요하다. 특히 긴 옷을 입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봄이 될 때까지 적절한 비타민D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비타민D는 하루 15~20분, 주 3회 이상 일광욕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별도로 비타민D 보충제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타민D를 강화한 우유나 간유, 정어리, 참치, 연어, 고등어 등에도 어느 정도 비타민D가 들어 있지만 자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면 음식을 통해 비타민D를 보충하기는 어렵다.

비타민D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 400~800단위 정도 비타민D를 보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비타민D 부족이 심한 사람은 하루 1,000~2,000단위가 필요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경 여성 중 30%인 220만여 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폐경 여성에게서 체내 비타민D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 마음이 울적할 땐 야외로 나가자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지는 가을이 찾아왔다. 역설적이지만 활동하기 가장 좋은 가을에 왠지 모르게 울적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울감과 공허감에 빠지면 세상만사가 귀찮고 재미가 없어진다. 항상 피로하고 생각도, 행동도 느려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감정은 흔히 경험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크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식욕 감퇴, 집중력과 기억력 감퇴, 성욕 감퇴, 불면증이 나타나고 때로는 그 반대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관절통과 두통, 위경련과 같은 신체 증상까지 나타난다. 극단적으로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을철 우울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일조량 감소와 기온 저하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푹 떨어지면 뇌에서 화학물질이나 호르몬 변화(세로토닌 저하, 멜라토닌 증가)가 나타난다.

가을 우울증의 최고 치료제는 햇볕이다. 매일 30분 이상 낮에 외출해 가능하면 많이 햇빛에 노출되는 게 좋다.

야외가 춥다면 창가에서 휴식을 취하며 햇빛을 자주 접해야 한다. 산책이나 조깅을 규칙적으로 하며 산소 섭취량을 늘리는 것도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사출처 : 매일경제〉



특수 투명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방범 보호커버, 택시기사님들!
이제 안심하시고 운행하세요!
오늘 **종합상사**가 만들어드립니다.
위 보호벽 칸막이는 투명한 특수소재임.
투께 6m/m경(폴리카보나이트 일명
방탄유리)소재 제품으로서 경량 초·강도에
강하며 흉기, 식칼이나 벽돌, 쇠파이프 등을
파괴하여도 특수방탄재질로서
기사나 손님사이 서로가 방어가 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해 사전에
위험에서 벗어나십시오.
한번 설치로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락처 : 02-2666-7440

동호회 탐방

승객분실물 찾아주는 춘천시 지부조합원들

분실물 찾아주는 아름다운 선행에 춘천시민들 “역시 개인택시가 최고야” 환영



▲ 분실 보관함에는 승객들이 분실물 신고조차 않는 물건들이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호반의 도시 춘천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펼치는 ‘승객들이 다놓고 내린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이 시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개인택시 강원도 조합 춘천시지부(지부장 박상원)는 지난 1월 1일부터 승객들의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춘천시내에서는 운행하는 1011대의 개인택시에 “춘천시와 춘천개인택시지부는 승객의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을 합니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놓고 승객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직원을 지정하고 지부 사무실에는 분실물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분실물 보관상자를 설치했다. 조합원들이 분실 찾아주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공고문을 지부사무실과 충전소 등 조합원들의 동선 곳곳에 붙였다.

지부 분실물 센터에서는 분실물 습득한 운전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분실물 사진, 일자, 종목 등을 꼼꼼히 적어 지부 홈페이지(<http://catxi.kr>)에 올려놓고 물품을 분실한 승객들이 인터넷 상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박상원 춘천지부장

춘천시 지부의 체계화된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은 시작 첫달에 23건의 분실물이 접수되어 갤럭시 노트북, 스마트폰 등 8건은 주인을 찾아갔다.

올 1월부터 시작한 분실물 찾아주기 실적은 10월 24일 현재 총 330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161건의 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줬다.

승객들이 차중에 놓고 내린 분실물은 핸드폰이 103대로 가장 많고 노트북도 23대나 된다.

이 밖에도 카메라, 손목시계, 안경, 지갑, 옷가지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분실물을 찾아가는 노력은 핸드폰, 노트북 등은 적극적인데 카메라, 안경, 카드, 옷가지 등은 승객들이 아예 분실물 신고센터에 신고조차 하지않아 분실물 상자에서 낯잠을 자고 있다.

그렇지만 습득한 분실물을 지부에 가지고 오는 운전자들은 귀찮은 마음보다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겠냐’고 걱정하면서 꼭 주인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2월 7일에는 여권과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 캐나다 교포가 다급한 목소리로 분실 신고를 해왔다.

사무실에는 습득 신고가 접수되기전 이어서 신고자의 연락 전화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정화 조합원이 습득한 지갑을 갖고 왔다.

사무실에서는 지체없이 분실한 교포에게 전화 연락을 했다. 낙담을 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동서울터미널로 가던 교포는 사무실로 돌아와 긴장을 풀고 환하게 웃으면서 ‘고국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감사하면서 한화 150만원의 캐나다 달러가 들어있는 지갑을 돌려받고 ‘고마운 추억을 선물받고 돌아간다’며 감사하면서 정정화 조합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캐나다에 오면 꼭 연락해달라고 초청하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박상원 지부장은 ‘습득한 분실물을 지부 사무실까지 오는 귀찮음을 떨쳐버리는 조합원들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차에다 놓고 내린 승객들의 습득물을 찾아주는 일한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최상의 덕목이라고 다짐한다.

또한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이 전국 개인택시 단체에 설치되어 개인택시 사업자는 습득한 분실물을 탐내지 않고 주인을 찾아준다는 인식이 승객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 문의처

- 지부장(박상원) : 010-8794-6060
- 부지부장(하정수) : 010-5371-2458
- 사무국장(최배철) : 010-3574-9989

공항, 호텔, 도심 어디든 2015 올란도 택시라면 모두가 만족합니다

대용량 짐 적재 / SUV 수준의 안전성 / 경제적 유지비 / 탁 트인 전방 및 좌우 시야 확보

2015 ORLANDO TAXI



FIND **NEW** ROADS™

2015 ORLANDO TAXI

운전석과 동승석 에어백 /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 Gen II 6단 자동 변속기 / 전자식 차속 감응 파워 스티어링

CHEVROLET



한국지엠 고객센터 080-3000-5000 쉐보레 공식딜러 아주모터스 02-2023-1900 대한모터스 051-712-3800 삼화모터스 02-753-9900 에스에스오토 02-513-0001 스피드모터스 042-520-4000

올란도 택시 LPGi 자동 6단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635kg 복합연비(km/ℓ) 8.0 (도심연비: 7.0 고속도로연비: 9.7), 5등급, CO2 배출량: 169g/km * 해당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